

수입·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신고서(신고필증)				처리기간 3 일
신고인	①성 명		②생년월일	
	③주 소			
④사 육 장 소				
⑤종 류				
⑥수 량				
⑦폐사·질병사유				
⑧처 리 계 획				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1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·질병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수의사진단서 1부(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)				없 음
2.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부				
제 호 수입·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신고필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[인] 귀하				

(뒤 쪽)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